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디 자 인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 정비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나.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00. 00.) 결과, 특기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의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1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라목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으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을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6조제2호, 제8호, 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녹색기술</u>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u>녹색기술</u> ----- ----- ----- ----- -----

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 7의3. (생 략) 8. <u>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u>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 10. (생 략) 11. <u>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u> 12. (생 략) 13. <u>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u> 14. (생 략) 제10조(디자인공보) ① (생 략)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	----- ----- ----- 3. ~ 7의3. (현행과 같음)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9.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현행과 같음) 제10조(디자인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 다. (생략)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생략)

11. (생략)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 다.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10.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u> 마. (생략) 11. (생략) ④·⑤ (생략)	<u>라. 법 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u> 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776